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39조의6제5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